



**풀러튼 학군  
절차 보호조치**  
**1973년 재활법의 섹션 504 및 2008년 ADA 수정법**

당신은 다음의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1. 귀하의 자녀가 장애로 인해 차별하지 않고 공립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혜택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2. 학군/프로그램은 연방법에 따른 귀하의 권리를 안내해야 합니다.
3. 귀하의 자녀의 식별, 평가 또는 배치와 관련된 공지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4. 귀하의 자녀가 무료 적절한 공립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이에는 적절한 범위 내에서 비장애 학생과 함께 교육받을 권리가 포함됩니다. 또한 학군/프로그램은 귀하의 자녀가 학교 및 학교 관련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평등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합리적인 조치를 취할 권리도 포함됩니다.
5. 귀하의 자녀가 비장애 학생과 동등한 시설 및 서비스를 제공받고 교육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6. 귀하의 자녀가 재활법의 섹션 504에 따라 자격을 갖추게 된 경우, 그 자녀는 개별 평가를 받고 특수 교육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7. 평가, 교육 및 배치 결정은 다양한 정보 원본과 학생, 평가 데이터, 및 배치 옵션을 알고 있는 사람들에 의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8. 학군이 결정한 대체 배치 위치로의 교통 수단을 제공받을 권리가 있으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이 학군이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배치된 경우와 비용이 크게 다르지 않아야 합니다. CHEP 제외.
9. 귀하의 자녀가 학군이 제공하는 비학업 및 과외 활동에 참여할 평등한 기회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10. 귀하의 자녀의 식별, 평가, 교육 프로그램 및 배치와 관련된 모든 관련 기록을 검토하고, 교육 기록의 사본을 합리적인 비용으로 얻을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그 비용이 기록에 접근하는 것을 사실상 방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요.
11. 귀하의 자녀의 기록에 대한 합리적인 요청에 대한 설명 및 해석에 대한 학군/프로그램의 응답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12. 귀하의 자녀의 교육 기록이 부정확하거나 오해를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있거나 그 밖에 자녀의 개인 정보 또는 다른 권리를 위반하는 경우, 교육 기록을 수정 요청할 권리가 있습니다. 학군/프로그램이 이러한 수정 요청을 거부하는 경우, 합리적인 시간 내에 귀하에게 통지하고, 청취 권리를 안내해야 합니다.
13. 지역 불만 제기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학군의 통합 불만 정책(이사회 정책 1312.1 및 13.12.2; AR 312.2)을 참조하십시오.
14. 귀하의 자녀의 식별, 평가, 교육 프로그램 또는 배치와 관련된 결정 또는 조치와 관련한 공정한 정당 절차 청취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귀하와 자녀는 청취에 참여하고, 변호사를 고용하여 자체 비용으로 대리할 수 있습니다. 공정한 청취 담당자는 학군에 의해 선정됩니다. 청취 요청은 Helene Morris, CWA, Section 504 Compliance Officer에게 서면으로 제출되어야 합니다.
15. 이 통지는 18세에 해당 권리를 가진 학생들에게도 제공될 것입니다.
16. 만약 학군이 법을 준수하지 않았다고 믿는다면, 민권청에 불만을 제기할 권리가 있습니다. 남캘리포니아를 담당하는 지역 사무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OFFICE FOR CIVIL RIGHTS, REGION IX**  
U.S. Department of Education  
50 Beale Street, Suite 7200  
San Francisco, CA. 94105

풀러튼 학군/프로그램 섹션 504 이행 담당자는 Helene Morris입니다. 그녀는 섹션 504 준수를 보장하는 역할을 맡고 있으며 714 447-7528로 연락이 가능합니다.